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자기추천제 대상 위원회

2018.02.08.

목 차

I. 자기추천제 대상 위원회 현황 1

II. 위원회별 개요

【제1차관실 소관】

1. 국가우주위원회 3

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5

3. 한국연구재단PM 외부평가위원회(과학기술분야) 7

4. 국가핵융합위원회 9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10

6.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11

7.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13

8. 여성과학인육성위원회 14

9. 연구개발특구위원회 16

10.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17

11.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18

【제2차관실 소관】

12. 4차산업혁명위원회 19

13. 정보통신전략위원회 21

14.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 전문심의회 23

15. 공익성심사위원회 24

16.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25

17.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26

18.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 27

【과학기술혁신본부 소관】

19.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8

20. 국가과학기술심의회 30

21. 간접비산출위원회 34

22. 성과지표심의위원회 35

23.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38

- 동 자료는 매 분기별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정할 예정입니다
- 각 위원회별 위원 임기는 차이가 있으며, 각 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자기추천」하신 분을 위원 후보자로 포함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1. 자기추천제 대상 위원회 현황

(제1차관 제2차관 혁신본부)

	소 속	위원회명	근거 법령	담당부서 (또는 사무국)
1	대통령	국가우주위원회	우주개발진흥법	거대공공연구 정책과
2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기본법	지재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
3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PM 외부평가위원회 (과학기술분야)	한국연구재단법	연구개발정책과
4	과기정통부	국가핵융합위원회	핵융합에너지법	원자력연구 개발과
5	과기정통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국제과학벨트법	지역연구진흥과
6	과기정통부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기술사법	미래인재정책과
7	과기정통부	생명공학융합정책심의회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기술과
8	과기정통부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여성과학기술인법 시행령	미래인재기반과
9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연구개발특구법	지역연구진흥과
10	과기정통부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환경안전팀
11	과기정통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초고성능컴퓨터법	융합기술과
12	대통령	4차산업혁명위원회	4차산업혁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4차산업혁명 위원회 지원단
13	국무총리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책총괄과
14	과기정통부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 전문심의회	인터넷방송법 시행령, 방송법 시행령	뉴미디어정책과
15	과기정통부	공익성심사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정책기획과

	소 속	위원회명	근거 법령	담당부서 (또는 사무국)
16	과기정통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심의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정책과
17	과기정통부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인터넷주소법	인터넷제도 혁신과
18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심의회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정보통신정책과
19	대통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헌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지원단
20	국무총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정책 조정과
21	과기정통부	간접비산출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연구제도혁신과
22	과기정통부	성과지표심의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평가심사과
23	과기정통부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평가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연구제도혁신과

※ 위원회 담당자별 연락처는 【붙임】 참조

1. 국가우주위원회

설치근거

-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 ※ “기본계획의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우주위원회를 둔다.”

위원회 구성

-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당연직)
- (위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10명) :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 10명
 - 위촉직(4명) : 우주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 간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주요 심의 사항

- 「우주개발기본계획」,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및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등’)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등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 정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우주개발사업의 이용·관리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우주개발사업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에 관한 사항

- 우주개발의 시정(是正)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위촉위원 자격요건

- 우주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 기능

- 본회의 및 전문위원회

구 분	기 능
본회의 (위촉직 민간위원 20명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
전 문 위 원 회*	창출 전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체제 개선을 통한 고부가가치 지식재산의 창출 ✓ 차세대 콘텐츠의 창출 및 글로벌 브랜드·디자인·SW의 국제경쟁력 강화 ✓ 창조형·개방형 지식재산 창출 환경 조성 ✓ 대학·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리 역량 제고
	활용 전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의 이전·사업화·창업 ✓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 ✓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 구현 ✓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육성 추진
	보호 전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 심사·등록의 안정성 제고 ✓ 지식재산 보호수준 선진화 ✓ 해외 지재권 보호기반 조성 및 침해대응 현지 지원체계 구축 ✓ 지식재산 분쟁해결제도 정비
	기반 전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 존중사회 구현 ✓ 지식재산 인력 및 인재 양성 ✓ 지식재산활동 고도화 기반 확립 ✓ 지역 및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신지식 전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제품 지식재산권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 생물자원 보존·활용을 통한 미래산업 선도 ✓ 전통자원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 유망 신지식재산 지원 강화 및 제도 마련

* 전문위원회별 15명의 민간위원(위촉직)으로 구성

위촉위원 자격요건

-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식재산기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3. 한국연구재단 PM 외부평가위원회(과학기술분야)

설치목적

- PM(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업무 추진현황을 점검, 개선사항을 도출업무 추진에 환류, PM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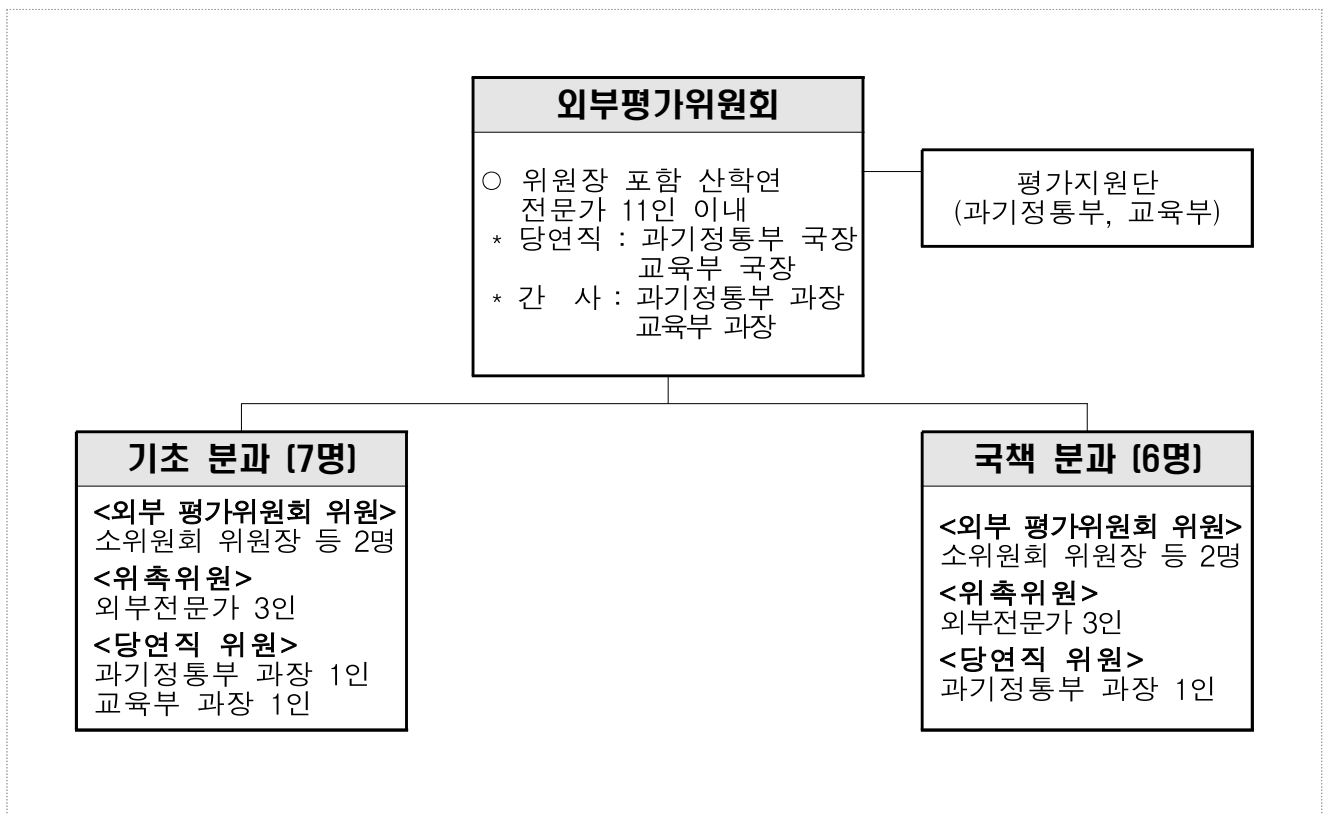
※ 근거법령 : 「한국연구재단법」 제15조

위원회 구성

- 외부평가위원회(1개), 분과위원회(2개*)

* 과학기술분야만 포함(기초분과, 국책분과)

< PM 외부평가위원회 조직도 >



❏ 위원회 기능

-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계획 수립·확정, 분과위원회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반영한 종합평가 실시 및 환류 등
- 분과위원회: 소관 PM에 대한 업무계획 대비 실적평가 수행

❏ 위촉위원 자격요건 (과학기술 분야)

구 분	자격요건
본 회 의(1)	✓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분과위원회(2) * 기초, 국책	

4. 국가핵융합위원회

설치목적

-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근거법령 :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6조

위원회 구성

- 본위원회 (1개), 실무위원회 (1개)

위원회 기능

- 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 분	기 능
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융합에너지진흥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 핵융합에너지 관련 중요 정책 수립·종합·조정 등 심의 ✓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교류에 관한 중요정책의 수립 및 조정 ✓ 핵융합에너지 기술의 실용화 촉진
실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전문적 사전검토 ✓ 본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부처 간 협의

위촉위원 자격요건

구 분	자격요건
본위원회 (10명 이내 위촉직 민간위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계·산업계·학계 연구경력 20년 이상 또는 박사 학위 취득 후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를 권장하나, 경력 미달자도 지원 가능
실무위원회 (15명 이내 위촉직 민간위원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계·산업계·학계 연구경력 10년 이상 또는 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를 권장하나, 경력 미달자도 지원 가능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설치목적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관련 기본 정책과 제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 주요사항에 관한 심의
※ 근거법령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위원회 구성

- 본회의(1개)
※ 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포함 22명 중 14명의 위촉직 민간위원 참여

위원회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촉위원 자격요건

- 과학기술, 도시개발, 연구성과 사업화 및 교육·문화·예술·환경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6.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설치목적

- 기술사 직무의 조정,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기술사 종합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자격의 심사 등, 그 밖에 기술사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심의

※ 근거법령 : 「기술사법」 제3조의2

위원회 구성

- 본회의(1개), 전문위원회(1개)로 구성
-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본회의>

구 분	위원 범위
위원장 (1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당연직 (15인 이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소속 고위공무원
위촉직 (14인 이내)	✓ 산·학·연 관련 전문가(9인 이내) 및 기술사회 회장 추천자 (5인 이내) 중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촉한 자

- <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

구 분	위원 범위
위원장(1인)	✓ 위촉직중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과기정통부 1차관)이 지명
당연직(5인)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
위촉직(10인 이내)	✓ 관련 전문가 중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과기정통부 1차관)이 위촉

위원회 기능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구 분	기 능
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사 직무의 조정,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기술사 종합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자격의 심사 등, 그 밖에 기술사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심의

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

구 분	기 능
전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자격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

위원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본 회의 (기술사법 제3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5명 이내) ✓ (민간위원) 과학기술과 기술사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9명 이내) ✓ (기술사회 추천자) 기술사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p>* 기술사 제도발전을 위하여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로서 전문 지식과 자격제도 등에 정통한 전문가</p>
전문위원회 (기술사법 시행령 제4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민간위원) 과학기술과 기술사 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10명 이내 <p>* 참여도가 높은 사람을 우선 추천</p> <p>* 국제제도와 관련되므로 타 국가 제도를 개방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사람</p> <p>*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본회의의 위원장이 지명</p>

7.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설치목적

-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 및 조정에 관한 업무 관장
※ 근거법령 : 「생명공학육성법」 제6조

위원회 기능

- 생명공학의 기초연구·산업적 응용연구, 연구·기술개발 기본계획 수립, 인력 개발 종합계획, 인력활용지침 수립, 산업기술인력 개발교류와 해외과학기술자 활용 계획 수립 등
-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

위원회 구성

- 위원장(과기정통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당연직, 8인), 민간전문가(위촉직, 8인 이내) 등 17인 이내

* 과기정통부, 기재부, 교육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위촉위원 자격요건

- 학계·연구기관 또는 산업계에 종사하는 생명공학 관계자 및 생명 윤리 전문가

8.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

설치목적

-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 적극적 조치, 여학생 비율 유지 등)
※ 근거법령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위원회 구성

- 위원장(과기정통부 제1차관) 포함 18명 중 8명의 위촉직 민간위원 참여

위원회 기능 (시행령 제5조제2항)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계획 심의(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이공계 진학 및 진출의 촉진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법 제7조)
- 여학생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 심의(법 제8조제1항)
- 이공계 여학생 우대 시책에 관한 사항 심의(법 제8조제2항)
- 우수한 이공계 여학생의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법 제9조)
-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연수·연구활동 지원 관련 사항 심의(법 제10조)
- 채용목표·직급별 승진목표비율 등 적극적 조치의 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법 제11조)
-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법 제14조제1항)
-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 위촉위원 자격요건

- 여성 및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여성 및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된 교육, 연구, 산업계 등에 장기간 종사하는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9.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설치목적

- 연구개발특구의 주요정책 및 제도,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특구의 지정·해제 등 연구개발특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

※ 근거법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위원회 구성

- 위원장(과기정통부 제1차관) 포함 18명 중 8명의 위촉직 민간위원 참여

위원회 기능

- 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1. 특구에 관한 주요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특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위촉위원 자격요건

-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연구개발·환경·외국인투자·기술사업화·기업경영·도시정책 등 특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10.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설치목적

-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정책의 심의·조정 및 안전관리를 위한 부처 간 협의·조정
※ 근거법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1항

위원회 구성

- (당연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 정책국장,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 정책국장
- (위촉직) 관련 전문가 10명
※ 현 위촉위원 직종 구성 : 교육인 4명, 공무원·공공기관 3명, 경제·기업·금융인 2명, 전문직업인 1명

위원회 기능

- 연구실 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 정책의 총괄·조정
- 연구실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 시 대책에 관한 사항 등

위촉위원 자격요건

- 연구실 안전 또는 그 밖의 안전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연구실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그 밖에 연구실 안전이나 일반 안전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1.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설치목적

-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관한 사항 심의
※ 근거법령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원회 구성

- 위원회 (1개), 실무위원회 (1개)

위원회 기능

-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 분	기 능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도입 및 배분에 관한 사항 ✓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 국가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인력 개발 및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집행의 조정 ✓ 첨단연구망의 유지·보수·활용에 관한 사항 ✓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결과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 그 밖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무 수행

위촉위원 자격요건 (비 과학기술·ICT분야 전문가 참여 가능)

구 분	자 격 요 건
위원회 (9명 이내)	✓ 초고성능컴퓨터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실무위원회 (9명 이내)	✓ 초고성능컴퓨터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12.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목적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과학기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의 기반 확보,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

※ 근거법령 :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17.8.22 시행)

위원회 구성

- 위원장(민간)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제1기 위원회는 민간위원장, 민간위원, 관련부처 장관(과기정통부, 산업부, 고용부, 중기부), 과학기술보좌관(간사) 등 총 25명으로 구성

◇ 위원장(민간, 위촉직, 1명)

◇ 민간위원(위촉직, 19명)

◇ 정부위원(당연직, 5명)

· 과기정통부·산업부·고용부·중기부 장관, 과학기술보좌관(간사)

하부기구

위원회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분야별 '혁신위원회', 특정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로 구성

- **혁신위원회** : 전문 분야별 심층 논의 (15인 내외 위촉직 민간위원으로 구성)

구 분	기 능
과학기술 혁신위원회	✓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개발, 네트워크 구축, 데이터 생산·활용 기반 강화, 역기능 대응 등
산업경제 혁신위원회	✓ 기술혁신형 창업생태계 조성, 전 산업의 지능화,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등
사회제도 혁신위원회	✓ 고용·복지 등 사회혁신,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사회문제 해결, 법제도 정비, 국제협력, 지역연계 등

- **특별위원회** : 특정 현안에 대해 심층 논의 (15인 내외 위촉직 민간위원으로 구성)

구 분	기 능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 스마트시티 선도국 도약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전략 수립 및 관련 정책의 발굴, 핵심사업 진행상황 점검 및 피드백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 보건산업 중 혁신적 신약·첨단의료기기·스마트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적 과제 중심 논의

※ 특별위원회는 특정 현안이 있을 때 신설 가능

❏ 위촉위원 자격요건 (비 과학기술·ICT분야 전문가 참여 가능)

구 분	자 격 요 건
4차산업혁명위원회	✓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 산업계 경력 5년, 학계 박사 취득 후 연구경력 5년, 연구기관 경력 5년 이상을 권장하나, 경력 미달자도 지원 가능
혁신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	

13.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설치목적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
※ 근거법령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위원회 구성

- 정보통신전략위원회
 - 위원장 : 국무총리(당연직)
 - 위 원
 - 당연직(11명) :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간사)·교육부·행정안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국무조실장
 - 위촉직(13명) : 정보통신 관련 대학 부교수 이상, 연구소·업계·시민단체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 15년 이상, 기타 총리가 인정한 전문가
- 정보통신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
 - 위원장 : 과기정통부 제2차관(당연직)
 - 위 원
 - (당연직, 8명)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문체부, 복지부, 방통위, 국조실 실장급
 - (위촉직, 20명) 정보통신 관련 대학 부교수 이상, 연구소·업계·시민단체 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 5년 이상, 기타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한 전문가

위원회 기능

구 분	기 능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 진흥·융합 활성화 기본계획(3년), 실행계획(1년)의 확정 ✓ 정보통신 진흥·융합 활성화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조치요구 ✓ 관련 연구개발 우선순위 권고, 부처간 정책현안 및 업무 조정 ✓ 국가 정보화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 등 심의·의결
정보통신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 ✓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을 발생시키는 법·제도 개선 ✓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진흥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 개선 ✓ 정보통신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 ✓ 정보통신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받거나 직접 발굴한 법·제도개선 과제 및 개선방안의 전략위원회 보고

위촉위원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 부교수 이상 또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소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정보통신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정보통신 관련 시민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경력자 ✓ 그 밖에 국무총리가 정보통신 관련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정보통신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 부교수 이상 또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정보통신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정보통신 관련 시민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자 ✓ 그 밖에 과기정통부장관이 정보통신 관련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14.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 전문심의회

설치목적

- 합산규제* 관련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등 실무조사 결과를 검증하고 심의할 전문심의회 구성·운영

*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는 특수관계자를 합산하여 전체 가입자 수의 1/3을 넘지 못함

※ 근거법령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방송법」 시행령 제4조의3

위원회 구성

- 법률·방송·통계·경영·경제 분야 전문가 9인으로 위촉·구성

위원회 기능

- 실무조사 결과보고서의 가입자 수 검증
- 불명확사례의 가입자 수 포함여부 판단
- 필요시 검증방법 및 절차의 개선사항 건의

위촉위원 자격요건 (고시 제10조)

전문 분야	자격요건
법률(판사·검사·변호사)	✓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방송·통계·경영·경제	✓ 관련 학과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방송 관련	✓ 관련 단체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기 타	✓ 그밖에 유료방송시장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5. 공익성심사위원회

설치목적

-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변경 등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사항*이 국가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 등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근거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15% 이상 소유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외국인과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등

위원회 구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공무원(8명)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6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

*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산업부, 공정위, 경찰청

위원회 기능

- 국가 중요통신망을 구축·운영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경영권 변동사항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

위촉위원 자격요건

- 정보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관련하여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그 밖에 공익성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6.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설치목적

- 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
※ 근거법령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7조제2항

위원회 구성

- 당연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및 위촉직 7명

위원회 기능

- 기금운용계획안,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기금 결산보고서 및 자산운용지침의 제정·개정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위촉위원 자격요건

- 기금의 관리·운용 및 방송통신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17.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설치목적

- 인터넷주소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의 승인 등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

※ 근거법령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위원회 구성

- 당연직(과기정통부 소속 국장, 간사) 및 10명 내외의 위촉직 민간위원으로 구성

위원 자격요건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

자격요건

- ✓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정보통신분야를 전공한 자
- ✓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 정보통신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18.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

설치목적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 근거법령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6조

위원회 구성

- 당연직 3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위원장), 정보통신산업정책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및 위촉직 7명

위원회 기능

-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수립,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 자산운용지침의 제정·개정 등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위촉위원 자격요건

- 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19.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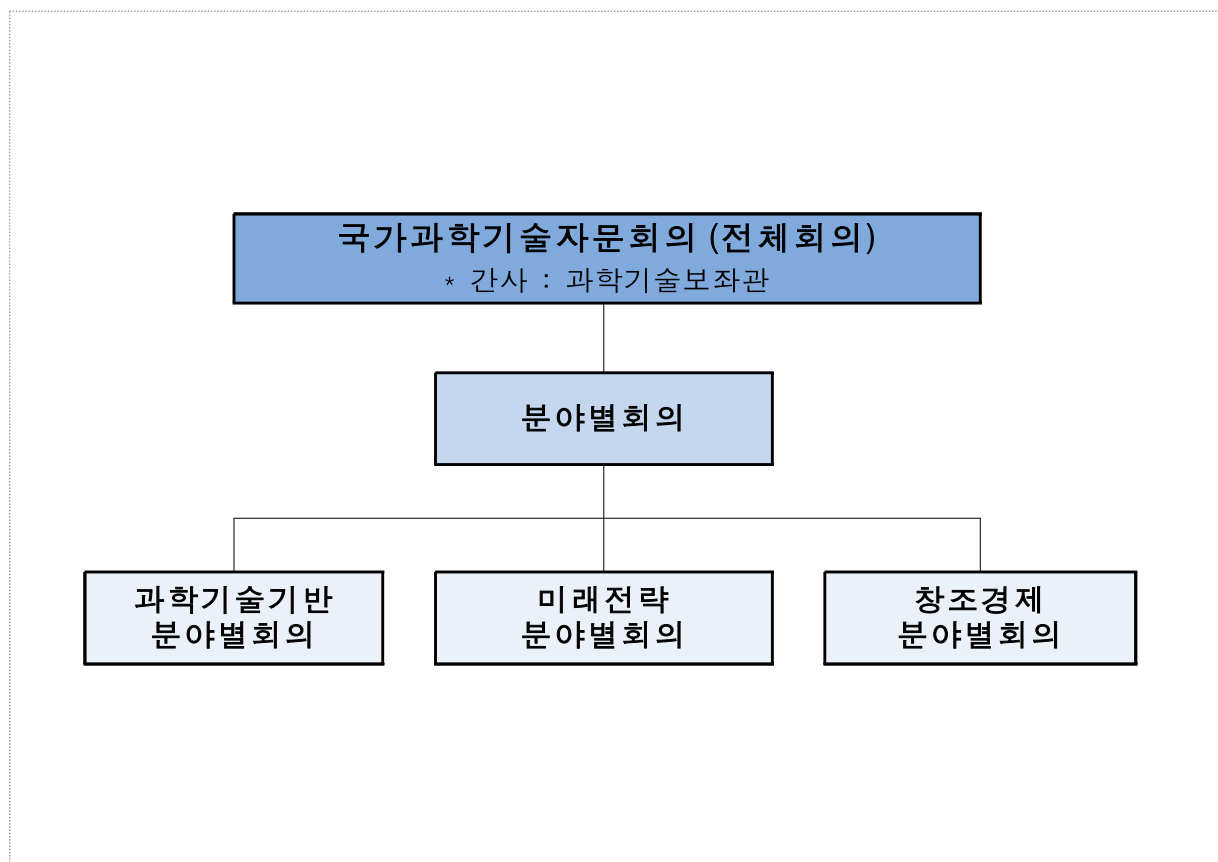
설치목적

- 과학기술 혁신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
 - ※ 근거법령 : 「헌법」 127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위원회 구성

- 자문회의(전체회의)(1개), 분야별회의(3개)로 구성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조직도 >



위원회 기능

자문회의(전체회의) 및 분야별회의

구 분	기 능
자문회의 (전체회의) ※ 위촉직 민간위원 30명 이내	✓ 대통령의 자문에 전문가적 의견을 제공 -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분야별회의	✓ 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자문회의의 위원을 3개 분야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 회의 개최 및 연구 모임을 활성화하여 분야별 전문성 제고
과학기술기반 분야별회의	✓ 과학기술제도, 인프라 등 과학기술기반 분야의 주요현안과 발전 동향 등에 대해 검토·자문
미래전략 분야별회의	✓ 미래예측과 전망, 유망 성장동력 분야와 국가적 중점투자방향 등 미래 전략 분야의 주요현안과 발전동향 등에 대해 검토·자문
창조경제 분야별회의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방과학기술육성 등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현안과 발전 동향 등에 대해 검토·자문

위촉위원 자격요건 (비 과학기술·ICT분야 전문가 참여 가능)

구 분	자격요건
자문회의(전체회의)	✓ 산업계 경력 10년, 학계박사 취득 후 연구경력 5년, 연구기관 경력 5년 이상을 권장하나, 경력 미달자도 지원 가능
분야별회의	✓ 전체회의 위원으로 구성 (당연직, 자기추천 지원 비대상)

20.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설치목적

- 과학기술 주요 정책, 과학기술 인력정책, 지역기술혁신정책 및 연구개발 계획·사업의 조정, 연구개발예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근거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

위원회 구성

- 본회의 (1개), 운영위원회 (1개), 특별위원회 (6개), 전문위원회 (10개), 협의회 (2개)로 구성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조직도 >



❖ 위원회 기능

- 본회의 및 운영위원회

구 분	기 능
본회의 (위촉직 민간위원 10명 참여)	✓ 과학기술 주요 정책, 과학기술산업화 인력정책, 지역기술혁신정책 및 연구개발계획사업의 조정, 연구개발예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운영위원회 (당연직*)	✓ 본회의에서 심의를 위임한 안건의 심의 ✓ 본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및 부처 간 협의

* 10개 전문위원회 위원장

- 전문위원회 : 운영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공통),
정부R&D 투자방향 마련 및 예산 배분·조정 (기술 분야)

구 분	담당 분야	
정책 분야	정책조정	✓ 과학기술 정책 및 현안, 범부처 과학기술 정책 총괄 기획·조정 - 과학 기술정책 전반
	중소기업	✓ 중소·중견기업 관련 과학기술 정책
	평가	✓ 성과평가, R&D제도, 국가연구개발 조사·분석 등
기술 분야	공공우주	✓ 항공, 우주개발, 해양, 극지 등 거대과학기술 분야 - 건설·교통, 재난·재해 분야
	에너지환경	✓ 핵융합, 원자력, 에너지, 자원분야 - 기상, 환경기술 분야
	ICT·융합	✓ IT, NT, ICT, SW 등 첨단 융복합 분야 - 서비스 R&D 분야
	기계소재	✓ 기계제조, 소재나노 분야 - 중소기업, 지역 R&D 분야
	생명의료	✓ 생명·보건·의료 분야 -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초기반	✓ 기초과학 진흥 및 R&D 인력양성 분야 - 국제협력, 대형 인프라 분야
	국방	✓ 국방R&D 관련 기술 분야

※ 위원회별 20명 이내의 위촉직 민간위원으로 구성

- 특별위원회 : 본회의 상정 안건 중 특정 담당분야에 대한 사전검토 및 위임된 사항 중 담당 분야에 관련된 안건 심의 등 각 분야 정책 총괄·조정

구 분	기 능
다부처공동기술협력 특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부처 및 민군기술협력 공동기획사업(공동사업) 관련 주요 정책사항 심의 ✓ 사전기획연구 및 공동기획연구 결과 심의·의결 ✓ 공동기획연구 대상사업 선정 ✓ 공동기획사업 추진체계 및 수행에 관한 총괄 조정 ✓ 민군기술협력 사업 관련 주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총괄 조정
공과대학혁신 특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과대학 혁신 관련 정책사업 조정 ✓ 공과대학 혁신방안 이행실적 점검 및 추가과제 발굴 등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기반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 ✓ 연구개발, 규제개선 등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성과를 점검 ✓ 성장동력 관련한 부처 간 의견조율과 관련 정책·사업을 연계
전문기관효율화 특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관 간 기능 조정 및 정비 ✓ 연구현장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 전문기관의 연구기획·관리·평가 등 연구관리 기능 효율성 제고
바이오 특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 분야(생명과학, 보건의료, 농림수축산식품, 산업공정, 환경·해양, 융합바이오 등)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 바이오 연구개발 성과 창출 및 확산 지원 ✓ 전주기 관점에서 부처 간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서비스R&D 특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R&D 관련 중장기 계획 및 투자전략 수립 ✓ 부처별·분야별 서비스 R&D 추진계획 심의 및 실적 점검 ✓ 서비스 R&D 관계 부처 사업 검토

※ 위원회별 10명 ~ 15명 내외의 위촉직 민간위원 참여

• 협의회

구 분	기 능
지방과학기술진흥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 조정 및 심의 ✓ 지방과학기술 관련 국가 R&D 예산운영 ✓ 지방자체단체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
기초연구진흥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구 투자 분석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조정·심의 ✓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사전 심의·조정 ✓ 중앙행정기관 간 기초연구 역할정립 및 중복투자 조정 ✓ 기초연구비관련 정부연구개발예산비율 산정

* 30명 이내 민간위원으로 구성(지자체 추천 당연직 + 위촉직 3~5명)

■ 위촉위원 자격요건 (비 과학기술·ICT분야 전문가 참여 가능)

구 분	자 격 요 건	
본 회 의		
특별위원회 (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계 경력 10년, 학계 박사 취득 후 연구경력 5년, 연구기관 경력 5년 이상을 권장하나, 경력 미달자도 지원 가능 	
전문위원회 (10개)		
협 의 회	지방과학기술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계 경력 10년, 학계 박사 취득 후 연구경력 5년, 연구기관 경력 5년 이상을 권장하나, 경력 미달자도 지원 가능
	기초연구진흥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 (<u>당연직, 자기추천 지원 비대상</u>) 	

※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의 기능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국과심 및 산하위원회 위촉위원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향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산하위원회 위촉위원 후보자로 전환됨

21. 간접비산출위원회

설치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 간접비 계상기준의 적용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위원회 구성

- 본회의(1개), 소위원회(1개)로 구성

위원회 기능

- 본회의 및 소위원회

구 분	기 능
본회의	✓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 간접비 계상기준의 적용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등 심의
소위원회	✓ 비영리법인별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

위촉위원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본회의	✓ 간접비 관련 연구계·학계·산업계 전문가 (위촉직 민간위원 10명 참여)
소위원회	✓ 해당분야 전문가 (10명 내외 위촉직 민간위원으로 구성)

22. 성과지표심의위원회

설치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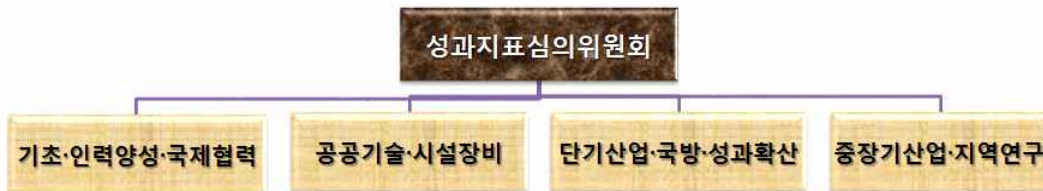
- 성과지표 설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응용·개발 등 연구개발 유형과 기술 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표준 성과지표를 개발·보급하며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목표·지표 점검결과 심의의결

※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기능

- 위원장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 1인 포함 20인 (4급이상 공무원 및 관련 민간 전문가) 이내로 구성

구 분	기 능
심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성과지표 개발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목표·지표 점검 기타 성과지표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분과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분야 및 사업 유형을 감안한 사업별 성과목표·지표 점검



※ 분과위원회(총 30명 내외의 위촉위원) 구성은 해당연도 사업 수 및 유형에 따라 변경 가능

위원 자격요건

구 분	자격요건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기정통부 평가담당국장 (위원회 사무 총괄, 회의 소집 및 주재 담당)
지명직 (5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사위원 (과기정통부 평가심사과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추천한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성과 담당 4급 이상 공무원 *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농진청 선정 (R&D예산, 사업 수 등 고려)
위촉직 (14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성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성과지표심의위원회 추진경과

● 제1기 (과기부, '06.12~'07.12)

- 구성: 정부위원 12명 (위원장 및 간사포함), 민간위원 4명 총 16명
- 1차 표준성과지표 개발·보급

< 1차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 개요 >

- 연구개발 유형을 추진목적 및 결과활용에 따라 28개로 구분
- 연구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136개 성과지표 제시
 - ※ 양적지표 114개, 질적지표 22개 등

● 제2기 (국과위 → 미래부, '12.3~'14.3)

- 구성: 정부위원 9명 (위원장 및 간사포함), 민간위원 11명 총 20명
 - ※ 舊 국과위 소속 성과지표심의위원회 이관 ('13.3.)
- 2차 표준성과지표 개발·보급

< 2차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 개요 >

- R&D 사업 유형을 28개에서 10개로 단순화
- 사업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설정 방안을 제시

- 3차 표준성과지표 개발·보급

< 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 개요 >

- 연구성과를 5대 성과 유형(과학, 기술, 경제, 사회, 인프라 등)으로 분류하고, 152개 성과지표(질적지표 104개) 개발
- 논리모형 등을 통한 사업 분석 방법 제시

● 제3기 (미래부, '14.7~'16.7)

- 구성: 정부위원 6명 (위원장 및 간사포함), 민간위원 14명 총 20명
- 4차 표준성과지표 개발·보급, '14~'15년 사업별 성과목표·지표 점검 등

< 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 개요 >

- 3차 표준 성과지표를 보완하여 단순 건수지표 등은 삭제하고 실효성 높은 질적 성과지표 위주로 개정(151개 성과지표 중 질적 지표는 108개)
- 연구개발 성과목표·지표 설정 방안 및 설정 빈도가 높은 지표의 사례 제시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목표·지표 점검

□ 개요

- 부처 및 사업특성(추진단계, 유형 등)에 맞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목표·지표의 개발·활용을 자문 관점에서 적절성·타당성 등을 점검
 - * (근거) 연구성과평가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 / (절차) 부처 자체점검 → 과기정통부 상위점검 (점검대상) 전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신규사업, 사업개편, 평가결과 지적, 부처요구 등)

□ 주요내용

- (점검방법) 부처 자체점검에 대해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4차)」 및 「상위점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점검 실시
 - 상위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점검 결과*의 적절성·타당성 점검
 - * 자체점검위원회를 중심으로 소관 사업 성과목표·지표의 기본사항,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 3개 항목을 점검
 - ※ 부처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평가’ 관점이 아닌, ‘자문’ 관점에서 수행
- (주안점) 사업특성과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성과목표·지표의 개발과 활용을 권고·유도
- (결과활용) 성과평가 시 목표달성도 평가에 활용하며, 사업수행·결과 등 관리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강화
 - ※ 성과목표·지표 점검 항목들이 ‘적절’ 하면 사업평가 시 목표달성도 점수 그대로 인정, ‘부적절’ 하면 사업의 목표달성도 점수 일부(50%)만 인정
- (추진절차) 사전검토 및 부처설명회, 점검결과 의견제시 → 부처 소명 및 의견 교환 → 부처와 협의·합의도출 → 최종 점검결과 확정

□ 추진일정



23.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평가단

❏ 설치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 검토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기술분야별로 위촉된 심의위원 중에서 전문성, 심의대상 장비 등을 고려하여 심의마다 위원 선정 및 유동적으로 분과 구성
 - ※ 약 300명 정도의 전문가인력풀을 구성하여, 적임 분과에 위원으로 위촉

❏ 위촉위원 자격요건

- 산·학·연 연구시설장비 전문가